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94 발의연월일: 2024. 8. 20.

발 의 자:이연희·조인철·임호선

조 국・황정아・박 정

박상혁 · 김정호 · 정성호

김남희 • 문금주 • 한민수

한준호 · 이춘석 · 이기헌

허 영ㆍ허종식ㆍ유종군

어기구 · 김윤덕 · 홍기워

박홍배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 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권 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법률 제 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력단절여성등"이란"을 ""경력보유여성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호 중 "돌봄"을 각각 "돌봄노동"으로 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제9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제3장에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경력의 인정 등)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 보유여성등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노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활동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경제활동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5조의3(세제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보유여성 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의4(포상)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제4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경력단절여성등"이란</u> 다음	 "경력보유여성등"이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임신·출산·육아	가
와 가족구성원의 <u>돌봄</u> 또	<u>돌</u> 봄노동
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3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	
족구성원의 <u>돌봄</u> 또는 근로조	<u>돌봄노동</u>
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	
다.	.
<u><신 설></u>	제4조의2(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경제활동 참
	여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

-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 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4. (생 략) <신 설>
 - 5. (생략)
 - ③ ④ (생 략)
-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여성가 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u>경력단절여성등</u>의 현황 등이 포 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① 정부는 <u>경력단절여성등</u>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제14조(일경험 지원) ① 여성가족 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

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	
럭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1. ~ 4. (현행과 같음)	
4의2.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증	
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u> 경력보유여성등</u>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① -	
<u>경력보유여성등</u>	
<u>.</u>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일경험 지원) ①	
<u>경</u> 력보유여성등	

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 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 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 다

②・③ (생략)

<신 설>

<u><신 설></u>

<신 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경력의 인정 등) 여성 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족구성 원에 대한 돌봄노동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활 동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여 성가족부장관은 경제활동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세제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보유여성
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
거나 「조세특례제한법」,「지
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
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제15조의4(포상) 여성가족부장관 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 터) ① (생 략)

-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 3. (생략)
- 4. <u>경력단절여성등</u>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보급
- 5. ~ 8. (생략)
- ③ ④ (생 략)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 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단체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 터) ① (현행과 같음)

- ② -----------.
- 1. ~ 3. (현행과 같음)
- 4. <u>경력보유여성등</u>-----
- 5. ~ 8.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